

의안 번호	1608	[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3. 9.(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3. 11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3. 20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가. 제안이유

『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재지 및 면적 : 번영로 454-1(메리트어학원 4층) / 226.09㎡
- 위탁 기간 : 2020. 4. 29. ~ 2022. 4. 28.(2년)
- 위탁 예산 예정액 : 160백만원(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, 구비 80)
- 신청자격 : 비영리법인으로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 모집
 - 서류심사 : 자격 및 결격사유 검증
 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5명 정도) 구성 후 심사

○ 위탁 사무

-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
-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
- 청소년의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및 진로탐색 교육과정 운영
- 센터 시설 관리 및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 : 4월

다. 근거법규

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진로교육법」 제16조(지역 진로교육센터)
- 「진로교육법」 제18조(진로체험지원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- 본 동의안은 『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』 운영을 진로·직업 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진로교육법」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원을 활용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진로교육법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**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진로체험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

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의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동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